

2025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추경)

③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플래그십) 제작지원(협력형) 공고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025년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플래그십) 제작지원_협력형 ○ 사업목적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중·소 기업 협력 콘텐츠 창작 지원을 통해 산업 내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5. 7. 15. ~ 12. 15.까지 (5개월 *예정) 	
지원개요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플래그십) 제작지원_협력형]	
구분	협력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전략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수요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 지원 ※ 기업별 [붙임2. 수요조사서] 기반 사업 진행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4억 원 이내 x 8개 과제 내외 ※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 1개사 - 제작기업(중소기업) 1개 과제 협력 ※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 구성 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은 컨소시엄 내 자율 편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활용 신기술융합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술의 성장단계 및 콘텐츠 융합 성숙도 고려 유형별 융복합 지원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AI기술과 콘텐츠산업(예: 음악, 게임, 웹툰 등) 간 상호 융합형 제작 지원 ② AI기술과 범용기술(VR/AR/MR/XR/미디어아트 등)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③ AI기반의 디지털휴먼(예: 버추얼휴먼, 가상아이돌 등) 활용 장르 중심형 콘텐츠 제작지원 ④ 그 외의 AI기술 기반이거나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편성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자부담금 편성만 가능함(국고지원금 편성 불가능) 단, 대표자가 과제책임자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율 최대 30% 국고지원금 편성 가능 (대표자≠과제책임자일 경우, 과제책임자 최대 30% 참여율로 편성 *국고지원금, 자부담금 가능)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중소기업(영리법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법인사업자) - 참여기관 구성 가능(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공공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비영리법인/공공기관: 국고지원금 신청 불가능, 자부담금 편성 가능 ↳ 중소기업/중견기업/산학협력단: 국고지원금 신청 가능, 자부담금 편성 가능 (단, 산학협력단의 경우 교수 인건비 국고지원금, 자부담금 편성 불가) ※ 25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선도,진입,협력) 최종선정 과제(주관/참여 모두) 지원 불가 ※ 25인공지능콘텐츠실증제작지원(선도,진입), 25AI영상콘텐츠제작지원과 동일 과제로 신청 불가, 다른 과제로는 신청 가능, 최종 선정은 1개의 사업만 가능(인공지능 콘텐츠 실증(플래그십) 제작지원/AI영상콘텐츠제작지원 중 1개)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내에 목표 과제(콘텐츠) 제작 및 실증이 완료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수요조사서] 기반 지원 과제의 목표(콘텐츠 결과물) 정량 수치화(구체화)하여 제시 - 과제는 성과 확산이 가능하며, 완성도 높은 제작 결과물 창출 가능해야 함 - 상용화 계획은 단순 예정이 아닌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일자, 출시방안 등)에 대한 출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함 ※ 수요기업의 구체적인 인프라, 네트워크 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향후 사업비 조정심의 단계에서 일부 항목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간	5개월('25.7.15. ~ '25.12.15.)		
지원규모	최대 4억 원		
자부담률	총 20% 이상, 현금		
지원과제	8개		
지원분야	구분	협력 수요기업	협력 제안주제
	1	CJ ENM	VFX 기술 융합 고품질 AI 콘텐츠 제작 및 국내외 마케팅 진행
	2	LG유플러스	XR 기술과 AI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드라마 콘텐츠 제작
	3	LG전자	환경/사용자 분석 AI를 활용한, 공간 감성 AI 앰비언트 오브제 콘텐츠 제작
	4	SM엔터테인먼트	팬 참여형 버추얼 아티스트 AI 보컬 음원 제작 커뮤니티 구축
	5	네이버	AI 활용한 VR·XR 기반 체험형 K-POP 영상 콘텐츠 제작
	6	삼익악기	사용자 창작 의도 기반 실시간 작곡·자율 연주 AI 피아노 콘텐츠 실증
	7	아모레퍼시픽	AI를 활용한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다인종 버추얼 인플루언서 영상 콘텐츠 제작
	8	엠비씨아트	사극 원천 IP를 활용한 생성형 AI모델 파인튜닝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참고사항	※ 수요기업명 오름차순 정렬. 과제별 세부내용은 [붙임2 수요조사서] 참조 수행계획서 작성 시, [붙임. 수요조사서] 참조하여, 가급적 과제명 준용 (최종 협약시 필요한 과제에 한해 과제명 일부 조정 가능)		

[자기부담금(현금) 산정 방법]

※ 자부담금은 십만 원 단위에서 올림, 자부담금 산정방법은 [1-3. 사업신청개요] 엑셀파일을 활용하세요.

협력형	국고보조금	총사업비의 80% 이내	
	자부담률	총사업비의 20% 이상	
	최대지원금(4억) 기준 자부담금(현금) 예시	국고지원금(A)	400,000,000원
		자부담금(B)	100,000,000원(총사업비의 20%) 이상 *십만 원 단위에서 올림
	총사업비(A+B)	500,000,000원 이상	

<FAQ>

1) (~ 내용/분야/기술 등)의 제작지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공고문 내 지원분야를 참고하시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도 주관기관/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단기일시성 콘텐츠 제작 및 자문 형태로는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 급여성·정기·지속성 운영비 편성 불가. 사업비 편성 안내자료 참조

3) 플래그십(선도형, 진입형) 신청한 기업인데 신청 가능 하나요?

→ 아니요. 공고문에 기재한대로, 선도형, 진입형, 협력형 중에 하나의 유형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플래그십(선도형, 진입형) 신청 기업은 본 협력형 공고 신청 불가합니다.

→ 또한, 기존 2025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선도형, 진입형, 협력형) 선정자는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2025년 AI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신청 기업은 본 공고에도 신청 가능 단 2개(플래그십영상) 사업 모두 최종 선정 시 1개 선택 필요)

4) 자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부담금을 ~원으로 산정했는데 적절한가요?

→ 세부안내의 지원비율 예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1-3 사업신청개요] 엑셀 파일 내 자부담금 계산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고지원금에 지원금 신청금액을 입력하시면, 최소 자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부담금은 십만 원 단위에서 올림 합니다.)

5)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혹은 참여기관)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자부담금 총액이 자부담율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ex) 협력형 자부담금: 1억

1. (주관기관 자부담금 1억, 참여기관 자부담금 0억) → 가능
2. (주관기관 자부담금 0원, 참여기관 자부담금 1억) → 가능
3. (주관기관 자부담금 5천만원, 참여기관 자부담금 5천만원) → 가능

6)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형태가 국고지원금, 자부담금 편성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구분	구분	국고지원금 편성 가능여부	자부담금 편성 가능여부
주관기관	중소기업	○	○
	중소기업/중견기업	○	○
참여기관	대기업/비영리법인/공공기관	x	○
	예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비교	개인사업자 불가		주관기관+참여기관 자부담금 총계가 자부담율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 6. 10. (화) ~ 2025. 6. 24. (화)
- 접수기간 : 2025. 6. 10. (화) ~ 2025. 6. 24. (화) 10:00까지
-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0-9595)

■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법인인감 미날인 시, 평가대상 제외)
- 사업신청개요
-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시트별 모두 작성)
- 참여인력 이력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서명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서명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평가 시 '지역기업' 배점 항목은 주관기관만 해당
- 중소기업확인서 (주관기관 필수, 참여기관 해당 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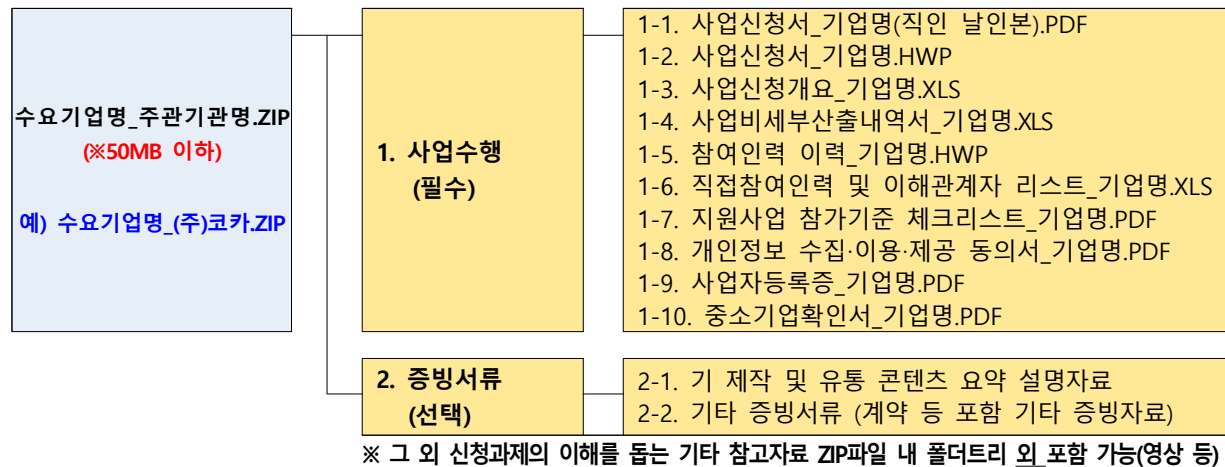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필수 확인 바랍니다.**

- 주관기관 필수이며, 참여기관 중소기업일 경우 필수
- 유효기간에 접수 마감일이 반드시 포함(주관/참여 모두)하고 있어야 함. 기간 만료시 평가대상 제외

제출서류 폴더트리

※ 파일 용량이 50MB를 초과할 경우, e나라도움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서면·발표평가 통한 지원대상 선정

단계	평가방법	내용	선정 과제수
1단계	서면평가	- 세부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각 최종선정 과제의 3배수 이내
2단계	발표평가	- 콘텐츠 구성 및 세부사업계획 발표 - 최종점수: 서면(30%)+발표(70%)	최종 8개사 선정 (수요조사서 1개 당 1개 과제)

※ 평가 단계별 기준 점수 및 선정 과제 수는 지원금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단계(서면) 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관련 서면평가 진행,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3배수 내외)를 2단계(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발표) 평가 : 1단계 통과 후 2단계 평가에 참여한 과제 중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통과
- 최종 선정 : 예산 범위 내 서면평가 30%+발표평가 70%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 최종선정 과제 협약 취소 등 대비 후순위 예비과제 선정 가능
- 사업비 조정 심의 : 최종선정 과제의 과제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 협력형의 경우 수요기업과의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 관계로, 사업비 조정 심의에서 수요기업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비 및 사업계획 최종 협의 후 확정

○ 평가기준

- 1단계(서면) 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수행기관 (20)	수행관리체계 구축 및 기관 전문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및 인공지능 콘텐츠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작 등 전문성 확보 여부	수행관리계획서, 유사과제 수행이력	15
	협업역량	제작 참여 구성원인 협력사와 협업역량 확보 여부	수행관리계획서	5
참여인력 (10)	참여인력 확보 및 전문성	참여인력의 확보(정규/비정규/용역) 및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여부	참여인력구성표, 참여인력이력(경력 등)	10
과제 이해력 (30)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사업수행계획서	30
과제내용 (25)	독창성 및 대중성	작품 내용이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및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사업수행계획서	25
기대성과 (15)	투자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10
	목표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사업수행계획서	5
합계				100

- 2단계(발표) 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비점
수행기관 (5)	재무건전성(계량)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신용평가결과	5
사업비 (15)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표	10
	국고지원금 편성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사업비 구성표	5
과제/역력 (15)	기획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 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 여부	사업수행계획서	15
과제내용 (30)	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사업수행계획서	30
기대성과 (30)	투자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10
	대중적 성과	대중들의 해당과제 소비·향유 정도	사업수행계획서	10
	사회적파급효과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공익성, 공공성 등)	사업수행계획서	10
ESG (5)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계획서 (일자리창출계획)	2
	지역기업(계량)	주관기관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점 소재지 기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3점	본사 사업자등록증	3
합계				100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지원요건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 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와 연구개발사업은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사업문의: AI융복합콘텐츠팀(☎061-900-6352)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용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